

제 정 : 1999.07.10
일부개정 : 2000.03.17
일부개정 : 2000.06.02
전부개정 : 2005.11.10
일부개정 : 2007.05.11
일부개정 : 2009.03.20
일부개정 : 2012.03.16
일부개정 : 2013.03.15
일부개정 : 2014.03.21
일부개정 : 2018.03.22
일부개정 : 2018.11.01
일부개정 : 2020.03.12

이사회 규정

2020.03.12

DAELIM

이사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직무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감독한다.
-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의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 ① 사외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의 요청은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대표이사에게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된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 ① 이사는 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가 속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이나 특정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또는 전체 주주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구 성

제6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7조 (대표이사 및 의장 선임)

-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 정관 34조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2009.03.20 개정]
- ② 이사회가 그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 제34조에 규정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 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013.03.15 개정]

2. 감사위원회 : 3명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 이 되도록 한다.
 3. 재무위원회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보상위원회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013.03.15 신설]
 5. 내부거래위원회 : 3인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020.03.12 개정]
- ④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9.03.20 개정]

제 3 장 회 의

제9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회씩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03.16 신설]
- ④ 전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03.16 신설]

제11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제10조의 소집권한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한 이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의 조력을 받아 이사회에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12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012.03.16 개정]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03.16 개정]

제13조 (질서유지)

- ①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다. 정관의 변경

라. 자본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마. 회사의 해산, 계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바.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사.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아.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2009.03.20 개정]
- 자.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카. 이익배당, 주식배당 결정 [2012.03.16 개정]
- 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파. 이사의 보수
- 하.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
- 거.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가. 연간 경영계획의 승인
-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라.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마.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2009.03.20 개정]
- 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사.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경영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 다. 준비금의 자본전입
- 라. 주식의 액면분할, 병합
- 마. 신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
- 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발행 [2012.03.16 신설]
- 사. 건별 자본총계의 5% 이상 회사채의 발행 [2012.03.16 개정]
- 아. 건별 자본총계의 5% 이상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한 기채사항 및 그 기간의 연장 [2012.03.16 개정]
- 자. 지분투자자와 관련한 건별 자본총계의 2.5% 이상 국내외 신규 투자 및 주식의 취득 및 처분사항 [2012.03.16 개정]

- 차. 지분투자와 관련하지 않은 건별 자산총계의 5% 이상 국내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 [2012.03.16 개정]
- 카. 공사수행과 관련하지 않은 건별 자본총계의 2.5% 이상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항 [2012.03.16 개정]
- 타. 상법 제542조의9에서 허용하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사항 [2012.03.16 개정]
- 파. 건별 10억원 이상 제 기부금 및 찬조금에 대한 결정 [2018.11.01 개정]
- 하. 해외증권시장 주권 상장
- 거.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재무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 가.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겸임 승인 [2012.03.16 개정]
- 다.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거나 이익에 해당하는 사업기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의 이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이용 [2012.03.16 개정]

5. 기타

-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 또는 응소
- 나. 준법지원인 및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 [2012.03.16 신설]
- 다.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준법통제기준 준수 및 공정거래자율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2012.03.16 신설]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5조 (권한 위임 사항)

① 이사회에서 재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별 자본총계의 5% 미만 회사채의 발행 [2012.03.16 신설]

2. 건별 자본총계의 2.5% 이상 5% 미만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한 기채사항 및 그 기간의 연장 [2012.03.16 개정]
3. 지분투자자와 관련한 건별 50억원 이상 자본총계의 2.5% 미만 국내외 신규 투자 및 주식의 취득 및 처분 사항 [2012.03.16 개정]
4. 지분투자자와 관련하지 않은 건별 자산총계의 1% 이상 5% 미만 국내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 [2012.03.16 개정]
5. 공사수행과 관련하지 않은 건별 50억원 이상 자본총계의 2.5% 미만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항 [2012.03.16 신설]
6. 공사수행과 관련한 건별 500억원 이상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항 [2014.03.21 개정]
7. 공사수행과 관련한 건별 자본총계의 2.5% 이상 국내외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Bond 및 L/C Line 등의 체결 및 그 기간의 연장 [2014.03.21 개정]
8. 건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제 기부금 및 찬조금에 대한 결정 [2018.11.01 개정]
9. 기준금액에 관계없이 한국거래소 공시 및 외부기관에 재무위원회의 의사록 제출이 필요한 모든 재무사항 [2009.03.20 개정]
10. 계열회사를 위한 책임준공계약 체결[2018.03.22 신설]
11.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서 내부거래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사전 결정 사항[2018.03.22 신설]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2018.03.22 신설]

③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별 자본총계의 2.5% 미만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한 기채사항 및 그 기간의 연장 [2012.03.16 개정]
2. 지분투자자와 관련한 건별 50억원 미만 국내외 신규 투자 및 주식의 취득 및 처분 사항 [2012.03.16 개정]
3. 지분투자자와 관련하지 않은 건별 자산총계의 1% 미만 국내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 [2012.03.16 개정]
4. 공사수행과 관련하지 않은 건별 50억원 미만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항 [2012.03.16 신설]
5. 공사수행과 관련한 건별 500억원 미만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항 [2014.03.21 개정]
6. 공사수행과 관련한 건별 자본총계의 2.5% 미만 국내외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Bond 및 L/C Line 등의 체결 및 그 기간의 연장 [2014.03.21 개정]

7. 건별 5억원 미만 제 기부금 및 찬조금에 대한 결정 [2012.03.16 개정]
8. 특수관계인과의 50억원 미만의 내부거래에 대한 사항[2018.03.22 개정]
9. 상법,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산운용 및 회사의 일상 업무에 관련한 사항, 이사회 결의 및 재무위원회 결의를 통해 기 승인한 안건에 대해 원안의 내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리 등의 수정 집행에 관한 사항 [2009.03.20 개정]

제16조 (긴급집행)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사전집행하고 즉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의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 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

-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제20조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17)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00.06.02)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05.11.10)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07.05.1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09.03.20)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2.03.16)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3.03.15)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4.03.2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8.03.2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8.11.0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20.03.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